

의안번호	2208935
의 퇴 인	권영진의원
회 답 일	2025.4.7.
추계번호	25B1543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115조제2항 (교육의 실시)	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장·감사, 조합임원 및 전문조합관리인(이하 “조합임원등”이라 한다)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(연임을 포함한다)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15조제2항 (교육의 실시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해당 조합임원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해당 교육 실시와 관련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은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, 내용, 비용부담 주체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는 교육의 운영방식이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,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개정 규정은

법 시행 이후 선임(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조합임원등부터 적용되므로
교육대상의 규모 또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임

- 아울러, 현행법 제115조¹⁾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
수강생이 납부하는 교육비로 운영중이며, 서울시의 경우 시비로 교육과정
을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
교육의 운영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합
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
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
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1) 제115조(교육의 실시)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, 조합
임원, 전문조합관리인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,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5조에 따른 교육 실시현황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1. 국토교통부 실시 교육

□ 교육대상

- 추진위원장 및 감사, 조합임원, 전문조합관리인,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,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실시

□ 교육내용

- 전문과정: 법령, 기초이론·실무, 윤리 등
 - 8주간 주 2회 총 64시간, 연 4회(회당 30명)
- 최고위과정: 제도개선 및 정책 등 전문가와 세미나식 교육
 - 8주간 주 1회, 총 32시간, 연 4회(회당 10명)

□ 교육주체 :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8조제2항²⁾에 따라 협회에 교육을 위탁

□ 교육비부담 : 수강생 납부

2. 서울시 실시 교육

□ 교육주체 및 교육비 부담: 서울시

□ 관련 조례 :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

□ 교육내용

- 필수과목(윤리, 공공지원제도 등), 단계별 교육(시공사 선정, 사업시행인가 등)
 - 3일간, 총 12시간, 연 5회(회당 80명)

2) 제28조(권한의 위임 등)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,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2.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